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라 합니다)이 2020년 6월 5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향후 입법예고 기한이 경과되면 금년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취지

-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나, ‘**非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금융그룹 단위의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비금융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 등으로 금융그룹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2.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가.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제5조)

-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①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할 것, ②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일 것, ③ 금융그룹에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1개 이상 소속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원칙적으로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 금융그룹 건전성 요건의 사전 심사(제6조)

- 금융위원회는 금융업을 신규로 영위하려는 자, 합병 등을 하려는 자 및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등이 금융위원회의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음으로써 금융그룹의 감독대상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금융그룹으로서의 건전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인가 등 여부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금융그룹이 최소한의 건전성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금융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입니다.

### 다. 금융그룹 유사명칭사용 금지(제7조)

- 감독대상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그룹’임을 표시하는 문자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 위험관리체계 및 건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금융회사가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인한 금융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입니다.

## 라. 대표회사 등의 선정(제8조)

-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의 지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책임있는 금융그룹 위험관리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금융그룹 소속회사 중 최상위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지정하되, 최상위 금융회사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그룹과 협의하여 대표회사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마.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 수립(제10조)

-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에 대한 정책 및 기준 마련을 통하여 금융그룹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수준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i)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은 정책의 운영, 업무 수행시 준수 원칙,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한 점검·대응방안,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방지, 소속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원칙, 임직원의 내부통제 수준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ii) 금융그룹 수준에서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 보호를 위한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바.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제11조)

-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체계가 책임있게 운영되도록 (i) 금융그룹 내부통제의 주요사항은 대표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대표회사 이사회에 최종적인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며, (ii)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를 설치하여 대표회사 이사회의 내부 통제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제12조 및 제13조)

- 금융그룹 차원의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 (i) 금융그룹은 금융그룹 수준에서 업무의 수행과정,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정책 등을 수립해야 하며, (ii) 금융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기타 주요내용

- 이외에도 (i) 금융그룹수준의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조항(제14조 내지 제17조), (ii)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간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등 제공·관리 및 공동광고 등 조항(제18조), (iii) 금융그룹의 금융감독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및 대표회사로 하여금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등 업무에 관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감독 및 검사 조항(제19조 및 제29조) 및 (iv) 금융그룹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금융그룹 건전성 개선조치 조항(제24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원 출신 고문, 변호사와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협업을 이루어, 금융 규제 업무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대다수의 금융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Contact us



**정찬묵**

파트너변호사

T. 02-316-4035

E. cmjung@shinkim.com



**윤정옥**

파트너변호사

T. 02-316-1638

E. joyun@shinkim.com



**최윤희**

파트너변호사

T. 02-316-1671

E. yhchoi@shinkim.com



**김세진**

소속변호사

T. 02-316-1575

E. sji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